#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18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이기헌・김주영・박수현

조계원 · 임오경 · 김원이

허성무 • 권향엽 • 박해철

강선우 · 복기왕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유산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은닉·처분 또는 현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굴 등의 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 수십 년간 국내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야시대 철기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은닉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장기간 발굴 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이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매장유산을 불법 으로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매장유산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 으로 매장유산을 다루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 굴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중처벌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않고 은닉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누구든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의 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이와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나. 국가유산청장은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 다.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이 변경된 정황을 알고 유상· 무상으로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 라.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32조제2 항 신설).

#### 법률 제 호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단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① 제6항을 위반하여 은닉 또는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lt;신 설&gt;</u> |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
|                     |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    |
|                     | 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   |
|                     | 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
|                     |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     |
|                     | 게 신고할 수 있다.         |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    |
|                     | 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
|                     |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    |
|                     | <u>여야 한다.</u>       |
|                     | 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단     |
|                     | 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    |
|                     | 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
|                     | 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    |
|                     | 여서는 아니 된다.          |
|                     |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   |
|                     |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                     | <u>령으로 정한다.</u>     |
| <u>&lt;신 설&gt;</u>  |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 |
|                     | 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
|                     |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
|                     | 지급할 수 있다.           |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생략)

8 제1항부터 <u>제6항까지의</u>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① 제6항을 위반하여 은닉 또는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 <u> ⑨ ------제7항까지의</u>---

제32조(가중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
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